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신규 식품 영업자 집합교육 실시 알림

---

1. 관련 : 「식품위생법」 제41조제6항 및 제7항('21.1.1일 시행)
2. 신규 식품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하기 전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19.12.3일)을 통해 집합교육이 의무화된 바 있습니다.
3.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2.9월까지 유예한 신규 식품영업자 집합교육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22년 10월부터 집합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 가. 적용대상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영업을 하려는 자
  - 나. 시행시기 : '22.10.1.~ 계속
  - 다. 교육방법 : 온라인·집합 교육 → 집합교육으로 실시
  - 라. 행정사항 : '22.9월까지 온라인 교육을 신청한 영업자는 12월까지 이수  
\* 교육기관별로 홈페이지에 팝업창 실시
4. 또한,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식약처 예규)제13조에 따라 교육실시기관은 영업자에게 교육통지서를 필히 송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에서는 교육장소 임차, 교육대상자 명단 등을 교육기관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5. 시·도에서는 상기 사항을 시·군·구 등 관련 기관에 전파하여 주시고, 식품 영업을 준비하는 민원인 등에게 집합교육으로만 신규 영업자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